산업통상부

산 업 통 상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요 협·단체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점검 요청

1.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5조(자체감사) 및 제17조(감사자료의 수집)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산업통상부는 산하 주요 협·단체의 채용 비위 가능성을 점검하고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 대상기간 : 최근 5년간('22~' 26.9)
나. 조사 대상 : 임직원 친인척 채용
다. 조사 범위 : 민법상(제777조)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라. 조사 방법 : 체크리스트(붙임1)에 따른 기관 자체 점검
마. 결과 제출 : 10.30일까지 점검결과(붙임2)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자체 점검결과는 기관장(비상근일 경우 상근 책임자) 결재를 득한 후 결재 사본 첨부
▷ 친인척 채용 건수가 많아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제출 가능 일정을 명시하여 제출기한 연장 요청 가능

바. 후속 조치 : 산업부는 제출 점검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 채용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4. 아울러 산업부는 전수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등(공직유관단체, 주요 협·단체 포함)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10.14~30)'를 개설·운영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와 함께 각 기관에서도 외부 홈페이지에 익명의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의 비밀 보장 및 불이익 방지 등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가 있는 경우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에 보고 필요

6. 이번 조사는 형식적 서류 점검이 아닌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

으로, 각 기관에서는 조사 대상과 자료를 누락하거나 사실을 축소·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후속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자체 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3. 권익위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1부. 끝.

산업통상부장관

수신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한국실크연구원장,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사단법인 KOTITI시험연구원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한국나노융합산업협회장,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장, DYETEC연구원장, 한국화학섬유협회장

주무관	오세정	과장	전결 2026. 10. 14. 박태규
협조자			

시행 섬유탄소나노과-1017 (2026. 10. 14.)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r.go.kr
전화번호 044-203-4284 팩스번호 044-203-4724 / osj135@motir.go.kr / 비공개(5)